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1-1	기관의 장
선	
람	

제10호 2017. 3. 10(금)

고시

○남원시 고시 제2017 - 2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/신정지구) 변경·결정 고시------ 1 ○남원시 고시 제2017 - 25호 재해위험저수지(청계제·방평제)지정 해제 고시 ------ 3 ○남원시 고시 제2017 - 2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5

공고

회					
람					
-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고시 제2017 - 24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/신정지구) 변경·결정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변경·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·결정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(☎ 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3월 10일 남 원 시 장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·결정 고시 조서

시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·결정 조서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"변경없음"

■ 결정조서

			면	적	(m²)	최 초	
구분	구 역 명	위 치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기정	신정지구	남원시 신정동 911번지 일원	22,505.2	-	22,505.2	남원시 고시 제2012-25호 (2014.04.27.)	

2) 지구단위계획에 변경·결정 조서

가)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·결정 조서 "변경없음"

	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	비고
	계	22,505.2	100.0	_
	제2종일반주거지역	1,929.0	8.1	_
도시지역	일 반 상 업 지 역	18,582.2	83.5	_
	자 연 녹 지 지 역	1,994.0	8.4	-

나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"해당없음"

다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·결정 조서"변경"

보

		가 구					획 지			
구분	번호	면 적(m°)	번	호	위	치	면 쯔	♯(m²)	비고
	인오	기 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				1	1	신정동 898 대	신정동 898 대	603.8	603.8	
기	상업1	25,498.0		2	2	신정동 899 대	신정동 899 대	603.9	603.9	
정	0 1	25,490.0		3	3	신정동 900 대	신정동 900 대	603.9	603.9	
				4	4	신정동 901 대	신정동 901 대	644.0	644.0	
				1	1	신정동 909대	신정동 909 대	423.8	423.8	
				2	2	신정동 910 대	신정동 910 대	403.6	403.6	
변 경	상업2	2,229.9	_	3	2	신정동 911대	시정도 011대	438.8	997.4	911,912번 지 합병
J				4	3	신정동 912대	신정동 911대	388.6	827.4	
				5	4	신정동 913대	신정동 913대	575.1	575.1	
				1	1	신정동 903대	신정동 903대	480.0	480.0	
				2	2	신정동 904대	신정동 904대	814.9	814.9	
기 정	상업3	2,560.8	_	3	3	신정동 905대	신정동 905대	430.0	430.0	
O				4	4	신정동 906대	신정동 906대	395.9	395.9	
				5	5	신정동 907대	신정동 907대	440.0	440.0	
				1	1	신정동 914대	신정동 914대	600.1	600.1	
기 정	상업4	1,445.3	_	2	2	신정동 915대	신정동 915대	410.1	410.1	
O				3	3	신정동 916대	신정동 916대	435.1	435.1	
기 정	상업5	559.2	_	1	1	신정동 917대	신정동 917대	559.2	559.2	
	VI OI C	700.0		1	1	신정동 919대	신정동 919대	380.1	380.1	
정	상업6	703.9		2	2	신정동 920대	신정동 920대	323.8	323.8	

라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 경·결정 조서 "변경없음"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·결정 관련도면 : 실음생략

남원시 고시 제2017 - 25호

시

재해위험저수지(청계제·방평제)지정 해제 고시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일

남 원 시 장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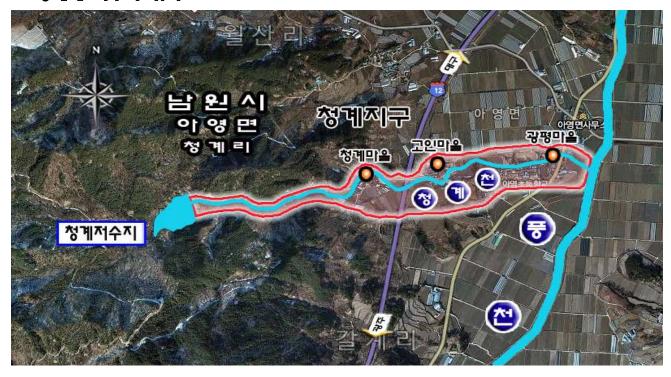
			제	원			비고	
저수지명	위 치	총저수량 (천㎡)	제방 길이(m)	제방 높이(m)	수혜 면적(ha)	해 제 사 유		
청계제 저수지	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427번지	342.8	98	19	60	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	보강·정비 완료후	
방평제 저수지	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69-13번지	7.8	77	9.4	8	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	안전점검 (A등급)	

2. **저수지 관리기관** : 전라북도 남원시(농정과 농업시설 063-620-6387)

남원시 청계제 - 방평제 저수지 위치도

○ 청계제 저수지 위치도

제10호



○ 방평제 저수지 위치도



남원시 고시 제2017 - 28호

제10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보

『농어촌정비법』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.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03월 10일

남 원 시 장

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
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
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
4. 사업내용

토 (/	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)		토 지 의 표 시					
성 명	주 소	시	읍면동	리	지번	지목	지적 (m²)	면 적 (m²)
0]**	경기도 시흥시 **** **** **** **-*	남원	운봉	화수	산30	임야	9,930	4,990

5. 사업기간 : 2017. 03. ~ 2018. 02. 28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9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7 - 383호

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"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"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3. 10.

남 원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류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
○ 명칭 : 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시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ㅇ 성명 : 남원시장

○ 주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(도통동, 남원시청)

3.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

○ 사업면적 : 110,000 ㎡

○ 사업규모 : 배수시설 정비 L=1,146m, 사면정리 2개소(옹벽 71m)

4.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○ 착수예정일 : 2017년 3월

○ 준공예정일 : 2018년 2월

- 5.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: 붙임 참조
- 6. 실시설계도서 :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비치 및 열람 가능
- 7.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(063-620-69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

□ 토지조서

		소재지				편입		소유자	c	이해 관계	인	
연번	시	면·리	지번	지목	지적 (m²)	면적 (m²)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 리	비고
1	남원	주생면 정송리	산8-13	임	1,190	29	박정○ 외 1인	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***				
2	남원	주생면 정송리	산8-11	임	4,165	227	이규〇 외 1인	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***				
3	남원	주생면 정송리	136	답	2,747	6	최인〇	남원시 주생면 정송1길 **				
4	남원	주생면 정송리	137-1	답	588	245	김재〇	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***				
5	남원	주생면 정송리	144-1	답	1,207	217	최두〇	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***				
6	남원	주생면 정송리	182	답	1,728	18	유종〇	남원시 동충동 현대아파트***				
7	남원	주생면 정송리	182-1	도	23	16	강성○	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***				

□ 지장물조서

서비		소재지				스라		소유자		이해 관계인		
연번	시	면·리	지번	종류	구조	수량 (m²)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 리	비고
1	남원	주생면 정송리	신 8- 13	창고	콘크리트 함석	76	박정○	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***				

남원시 공고 제2017-386호

「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
1. 제정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지원 대상 및 선정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지원 등 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재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 제출 사항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 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

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 남원시청 재정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0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(☎063-620-62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위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 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 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지방세" 란 「지방세기본법」제1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.
 - 2. "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" 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로 한다)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, 연간 3건 이상의 시세(담배소비세, 균등분 주민세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,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)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지원 대상)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원 대상 선정)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를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- **제5조**(지원 등)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
 - 2.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
 - 3.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, 다만,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.
 - 4.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
-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		의 견 제 출 서
1. 의견제출	는 목록		「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의견제출
0 ポネカ	성명(명칭) . 제출자		
2. 제품사	주	소	
3. 의 경			
4. 7) E	l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시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7 - 397호

시

남원도시관리계획(시설:문화시설)결정"안"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 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 2017년 3월 10일

1. 남원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문화시설) 결정조서

	도면					면적(㎡)		최 초	
구분	표시 번호	시설명	위	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신설	3	문화시설		260번지 [원	_	증)1,762	1,762	금회	

- 2. 입안사유: 광한루원 주변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구도심권의 관광자원 집적화를 통해 남원시의 중심지 회복 및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도 모하고자 기 시설 폐지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 도시계획 시설(문화시설)을 결정하고자 함
- 3. 공람기간 :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이상
- 4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

: 남원시 도시과(063-620-6452) 및 관광과(063-620-6179)

5. 관련도서 : 실음생략(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, 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.)

남원시 공고 제2017 - 399호

남원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 : 실상사역사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

남원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: 실상사 역사공원)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남 원 시 장

2017년 3월 10일

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:역사공원) 사업
- 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
사 업 명	위치	시설명	도면표시번호	사업면적(m²)	사업시행자	비고
남원 실상사 역사공원 정비사업	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-1번지 일원	역사공원 (실상사 역사공원)	2	1,058 (전체 63,475)	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	

- 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~ 2017. 12. 31.
- 4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,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: 실음생략
- 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: 따로붙임
- 6. 열람기간 : 열람게재 익일부터 14일간
- 7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56)
- 8. 기타사항: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

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

○ 토지조서

	소재지	지번			면적(㎡)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
일련 번호		본번	부번	지목	공부상 면적	편입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함		계		11,096	1,058						
1		47		답	1,578	640	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	50	-	-	-	
2	11011	47	1	답	563	48	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	50	_	_	-	
3	일석리 	46		답	1,321	264	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	50	_	_	-	
4		43	18	답	823	36	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	50	_	_	-	
5		781	4	구거	6,811	70	농림축산 식품부					

○ 지장물조서 : 해당없음

남원시공고 제2017-402호

시

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2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03월 08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기관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재정비(안 제20조, 안 제22조, 안 제23조)
 - 경사도 완화,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세부 허가사항 규정
- 나.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개선 (안 제43조제1항제2호)
 -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
- 다. 어린이집,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 (안 제62조제4항)
- 라. 전자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및 전자심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69조제4항, 안 제75조제2항)
 - 전자심의 개최 범위 및 수당 지급
- 마.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문구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(안 제69조제5항)
- 바. 2분과 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심의 관련사항 정비(안 제70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7년 03월 28일**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O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 번호
- O 의견 제출할 곳 : 우 55738

시

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

O 의견 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(063-620-6716)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

(http://www.namwon.go.kr/)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5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시

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. (단,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

경우 도시계힉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.)

-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"를 "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·설토량을 최소화하고,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(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.)
- 제2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43조제1항제2호 중 "정신병원 및 격리병원"을 "격리병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 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.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
 - 2.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
- 제69조제4항 중 "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"을 "심의·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는 서면(전자심의)로 심의·자문할 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최초심의를 포함

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"를 "2회를 초과할 수 없다."로 한다.

시

제70조제1항제2호 중 "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·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"을 "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지정·변경으로서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 구역의 심의,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심의"로 한다.

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② 전자심의로 심의·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시

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, 도시계획위원회(제1분과위원회)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<u>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</u> <u>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(조</u> 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)

가.·나. (생 략)

3. ·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2조(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) 시 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·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 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

<신 설>

개	성	안

제20소(개발행위허가의 기순) ①
,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. (단, 도시지역 내 15도이상의 경우 도시계힉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.)

가. • 나. (현행과 같음)
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·설토 량을 최소화하고, 토사의 외부 반 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(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.)

제23조(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)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 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 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
시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- 제43조(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없다.
 - 1. (생략)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
 - 3. ~ 13. (생 략)
 - 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제23소(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?	의
채취)	-
	_
	_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3조(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

- (1) -----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격리병워
- 3. ~ 1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 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 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 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 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 과할 수 없다.
- 1.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 률의 120퍼센트
- 2.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

제69조(회의운영) ① ~ ③ (생 략)

시
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 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 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.
-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<u>최초심</u> 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⑥·⑦ (생 략)
- 제70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113조제3 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제2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 의, <u>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</u> <u>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·변경</u> 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 - 3. (생략)
 - ② ~ ⑤ (생 략)

제75조(수당 및 여비) (생 략)

<신 설>

<u>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</u> 한도

제69조(회의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④ -------- <u>심의·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</u> 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(전

자심의)로 심의 · 자문할 수 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---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의 지정·변경으로서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 구역 의 심의,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심의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75조(수당 및 여비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전자심의로 심의·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시

				의 견 제 출 서
1. 의견제출 목록			<u>!</u>	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
2. 제출자	ᆌᄎᆌ	성명(명칭)		
	세물사	주	소	
3.	의 견			
4.	기 티	-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

남원시 공고 제2017 - 407

공시송달공고

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3. 10

남 원 시 장

- 1. 제 목 :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17. 3. 10 ~ 2017. 3. 24.
- 3. 납부기한 : 2017. 3. 31
- 4. 공시송달내용

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,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 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시송달내역 : 붙임

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

(단위:원)

납세자	납세자 번호	과 세 번 호	세액	송달사유	간주납기
김*수	75****-****	140002-2017-02-2-***-26	393,710	수취인미거주	2017. 3. 31